

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」을 위반한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’를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, 「행정 절차법」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.8.10.(월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7월 8일

보건복지부장관

공 시 송 달 공 고

1. 제 목

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
2. 근 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

3. 공고 대상자 및 내역

행정처분 사전통지서							
처분제목(예정)	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						
당사자	성명(생년월일)	김용득(790826-1)		면허번호	물리치료사 제22****호		
	주소	광주시 북구					
처분내용(예정)	면허취소	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○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- 물리치료사 김용득은 2017.12월경부터 2020.11.30.경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**의원 등 병원에서 강**의 알선으로 박**으로부터 매월 40만원 (2020.8월경부터 2020.11월경까지는 매월 80만)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**에게 대여하였음.						
사법처리결과	○ 벌금 600만원 (서울서부지방법원, 2020.5.4., 2021고단2586)						
처분관련 법적근거	○ 구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3호 ○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[별표] 행정처분기준(보건복지부령 제669호, 2019.8.30.) 2.개별기준 가.06)						
주의사항	○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(국내·외 의료봉사 포함) 수행 불가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보건복지부	부서명	의료자원정책과	담당자 전화번호	044-202-2459
		주소	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			팩스번호	044-202-3925

※ 주의사항 ※

-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관련 당사자는 2026.8.10.(월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,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,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끝.